[이용계약에 관한 사항]

1. 계약기간
 1)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 2) 이용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.
 3)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
 1)복지용구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.
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 2)서비스 계약체결: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,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 ①공정거래위원회의 복지용구제품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.
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 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 가.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 나. 센터는 산정된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받고, 본인부담금 을 제외한 나머지(공단부담금)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.
 다.
 연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한다.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.

구 분	부담금액 (상기 수가의)	
본인부담금	일반수급자	15 %
	의료 및 감경대상자	6%,9 %
	기초생활 수급 대상자	면제

4.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 가. 서비스제공자 의무

 1)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상담을 진행하며, 사용 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되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.
 2)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기능, 안전성 및 위생 상태

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.
3) 복지용구의 이용자의 신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의 조정을 실시해, 사용 방법, 유의 사항 및 고장시의 대응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용 방법의 지도를 실시한다.
4) 이용자로부터의 요청에 의해,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.
5) 사업소는 수급자가 입소 중이거나,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, 만약 수급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(보호자)가 부담한다.

나. 수급자(보호자)의 의무

1) 이용료 납부 의무
2)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3) 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(원)시 즉시 통보 의무(대여자에 한함)
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5)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, 가공 또는 개조를 할수 없다.

다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1) 인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2) 인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“을”이 “갑”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.
3)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사업소에 통지하여야한다.
①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
② 수급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
③ 수급자의 사망

5. 계약의 해제

1.대상자(보호자)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②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 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④3회 이상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⑤기타 대상자(보호자)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.대상자(보호자)는 제22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‘센터’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.

3.센터는 제22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대상자(또는 보호자)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